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7340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4. 17.
판 결 선 고	2015.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8. B으로부터 [redacted]구 C건물 제15층 제1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2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2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취득세 9,000,000원, 지방교육세 900,000원, 농어촌특별세 450,000원 합계 10,35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9. B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심각한 누수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0935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2013. 6. 2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1.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 2. 28.자 매매계약은 원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2013. 2. 26.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로써 취소되었음을 확인한다. 2. B은 원고에게 2013. 8. 6.까지 위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225,000,000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으로서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라. 원고는 2013.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1. 10. [redacted]시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4. 기각결정을 받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실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취소된 것임에도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취소되었다고 조정조서에 기재된 점, 조정조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이 당연히 성립하고,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한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과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함으로써 바로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약 2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은 조정으로 종결되었는바 이는 그 조정조항 내용에 취소라고 기재되어 있음도 불구하고 사실상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남성우

판사 김재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19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